

제2718호  
2020. 3. 23.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전산과장 김건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0-22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가로가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2

-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자 치 법 규

###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226호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과 상충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노점실명제 정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보조운영자 인정범위 축소

-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나. 운영자 사망시 직계 존비속 송계 제한

- 배우자에 한해 송계(재승계 금지), 직계 존비속에게 송계 금지

##### 다. 감염병 등 재난재해 시 조치 규정 신설

- 국가 및 지역사회의 재난재해 시 거리가게 임시폐점 등의 필요 조치 가능

##### 라. 오폐수 처리 규정 신설

- 배수시설이 있는 지정장소 배출로 단속 근거 명확화

##### 마.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규정 신설

-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민형사상 책임 부과

####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가로환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7층 가로환경과(예관)

동), 전화 : 02-3396-6054, 팩스 : 02-3396-8832, 이메일 : eomjigog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엔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정의 개정안은 중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조운영자”란 운영자가 신고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선정하며, 미달시에는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를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후단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3항제1호 중 “버스정류장 양끝 3m”를 “버스, 택시 승강장 양끝 2m”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3항제2호 중 “지하철 출구로부터 5m”를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출입구로부터 2.5m”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3항제3호 중 “3m”를 “2.5m”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3항제4호 중 “지하도, 육교입구로부터 3m”를 “육교로부터 2.5m”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4항 중 “3m”를 “2.5m”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제2항 중 “있다(단, 유사 품목은 제외한다). 또한”을 “있으며,”로 하고, 후단에 단서 “단, 먹거리로의 변경은 불가하다.”를 신설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중 제2호 “정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을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2항 중 “매년 재산 등 자격조건”을 “매년 자격조건”으로 한다.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노점실명제 참여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4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 제1호 단서 중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직계가족 중 1인이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 내에서”를 “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9조) 제2호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 제3호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제1항제2호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제10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단서를 삭제하고,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를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로 하며, “연 3회”를 “허가기간 내 3회”로 한다.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1호”를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12조제10항”을 “제11조제10항”으로 하고,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연 120점”을 “허가기간 내 120점”으로 한다.

## 2. 거리가게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단,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3항을 삭제하며, 제1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1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한다. 같은 조(종전의 제12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운영자 증명서를”을 “도로점용허가증을”로 하며, “부착하여야 하며 운영자 증명서에는 운영자 및 보조자(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인)의 사진을 첨부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제8항 중 “각종 도로점용료”를 “도로점용료”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거리가게는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거리가게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감염병 등 국가 및 지역사회의 재난·재해 시 거리가게 임시폐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오·폐수는 배수시설이 있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것.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제1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제2항 중 “[도로법]제7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른”을 “[도로법]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5”를 “제14조”로 하고,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사전 통지 등의 절차”로 한다.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거리가게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위탁교육,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과 관련한 위탁교육시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9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종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의 관련규정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관련규정 제9조 및 제12조(종전의 제10조 및 제13조)에 대한 위반행위 제1호 중 위반횟수 1회 시 조치기준 “시정명령”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로 하고, 위반행위

제2호 중 “제3조2호”를 “제2조제2호”로 하며, 위반행위 제5호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위반행위 제6호 중 “판매대 종류”를 “허가된 품목”으로 하며, (먹거리류, 잡화류(공산품류), 취급 품목 미준수)를 삭제한다. 관련규정 제11조 및 제12조(총전의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한 위반행위 제1호 중 “운영자 증명서를”을 “도로점용허가증을”로 한다. 관련규정 제10조(총전의 제11조)에 대한 위반행위 제3호 중 “제12조제7항”을 “제11조제7항”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4호(총전의 제5호) 중 “연120점”을 “허가기간 내 120점”으로 하고, 제7호(총전의 제8호) 중 “제7조 제1항 제1호”를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개정 2020. 4. 1.>

#### 거리가게 위반행위 조치기준 개정안

위반행위	관련 규정	위반횟수			벌점
		1회	2회	3회	
1.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9조 제12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30
2. 판매대 외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3. 임의로 판매대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사람 외에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5. 제6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허가취소	
6. 허가된 품목에 반하는 물품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7.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판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8.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9.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대 내에 도로점용허가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12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10
2. 위생정결 유지 등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3. 판매대 벽면 등 외부에 승인받지 아니한 포스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첨하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4. 판매대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기타 판매대 관리 등 운영자의 의무 미준수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10조				취소

2.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조제7항에 따른 구청측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4. 누적벌점이 허가기간 내 120점 이상인 경우 5. 판매처를 대부목적 및 점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7.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된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 의 형이 확정된 경우					
---	--	--	--	--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lt;개정 2020. 5. 1.&gt;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 노점실명제 참여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매대크기(m)	
	매대형태	규격, 비규격( )
	판매품목	
	영업위치 (상세히)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조건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노점실명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참여조건

-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중구청의 노점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 노점위치와 매대크기·디자인 조정 등 노점실명제 추진과 관련한 중구청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노점실명제 추진과 관련된 협의는 집행부(대표)를 구성하여 중구청과 협의한다.
- 위 각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명제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노점정비 등 중구청 노점정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서식] &lt;개정 2020. 5. 1.&gt;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p style="margin-top: 10px;">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 가게 운영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 니다.</p>				
신청인		<span style="margin-right: 20px;">년      월      일</span> <span>(서명 또는 인)</span>		
<b>중구청장 귀하</b>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본 규정 제7조제3항)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able>			수수료
수수료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3호서식] &lt;개정 2020. 5. 1.&gt;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번호	
	최초 허가기간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 및 면적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본 규정 제7조제3항)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li> <li>2.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li> <li>3.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li> </ol>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 style="padding: 2px 5px;">수수료</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1,000원</td> </tr> </table> </div>	수수료	1,000원
수수료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4호서식] &lt;개정 2020. 5. 1.&gt;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책 임자	○○○
담당자	○○○
연락처	3396- 0000



## 도로점용허가증

허가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과 본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허가사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용료	
6. 판매품목	

**허가 조건**

1. 거리가게 영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 외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리가게 영업은 지정한 자가 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증을 부착하며, 타인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거리가게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00:00부터 00:00까지 정해진 시간으로 하며, 이동형 판매대는 영업종료 후 이동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4. 영업 취급품목은 승인된 것에 한정하며 상표법 등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1년마다 기간을 연장한다.
6. 도로점용허가와 거리가게 영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종료 시 동시 소멸한다. (단, 운영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거리가게 운영자는 세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며, 위반사항 통보 시 허가취소 등 책임을 진다.
8. 거리가게 운영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구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고, 계고,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등 거리가게 질서 확립 차원의 처분을 받는다.
9. 거리가게 운영자는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물건 등을 적치해서는 안 되며, 거리가게 영업 중이나 종료 후에도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0. 소방도로 미확보, 전기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거리가게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11. 질병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거리가게를 임시폐점 하여야 한다. (단,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12. 위 사항 각 호의 허가조건과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및 벌점을 병과하여 처분한다.
13. 허가받은 자는 본 규정과 구청장이 도로관리와 시장내 환경정비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4. 점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lt;개정 2020. 5. 1.&gt;

## 보조운영자 등록 신청서

보 조 운영자	성명	
	생년월일	운영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운 영 자 허가내용	허가번호	
	성명	
	점용장소	
	점용기간	
	판매품목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운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 영 자    (서명 또는 인)  
 보조운영자    (서명 또는 인)

###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보조운영자 등록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규정 제11조제1항)
유의사항	<p>1. 보조운영자는 거리가게 운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p> <p>2. 보조운영자는 본 규정과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p>3. 운영자와 보조운영자 외 제3자가 거리가게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p> <p>4. 기타 노점실명제 실시에 필요한 운영자 및 보조운영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p>

수수료
없음

[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20. 5. 1.&gt;

## 거리가게 임시폐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번호	
	임시폐점 사유	
	임시폐점 기간	
<p>「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 임시폐점을 신청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 style="margin-right: 10px;">신청인</span> <span style="font-size: small;">(서명 또는 인)</span> <span style="margin-left: 10px;">년      월      일</span> </div> <p style="text-align: center;"><b>중구청장</b> 귀하</p>		
근거법규	운영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계속 거리가 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본 규정 제11조제3항)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 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li> <li>2.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30일 이상 폐점하는 경우에는 행정처 분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li> </o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수수료</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없음</span> </div>	

[별지 제7호서식] &lt;개정 2020. 5. 1.&gt;

## 중구 거리가게 관리대장

운영자 정보	
허가번호	No.
운영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운영보조자	성명 : (생년월일 : , 관계 : ) 주소 :

시설정보			
설치일자	. . . .	제작사	(☎)
인접지 주소			
점용지 주소			
점용면적	$m^2$ (가로 m × 세로 m)	계약전력	kw 일반용전력(갑)
판매품목			

거리가게 사진	

참고사항	

허가번호	No.
------	-----

[별지 제8호서식] &lt;개정 2020. 5. 1.&gt;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번호		
	허가기간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 및 면적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변경내용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본 규정 제7조제3항)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li> <li>2.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li> <li>3.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li> </o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0;"> <tr> <td style="padding: 2px;">수수료</td> </tr> <tr> <td style="padding: 2px;">1,000원</td> </tr> </table>	수수료
수수료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5.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연장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3. (생략)	1.2.3.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u>4. “보조운영자”란 운영자가 신고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4조(거리가게의 선정기준) 거리가게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사항을 적용하여(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가게의 선정기준) (현행 제4조와 같음)
1. 거리가게 운영자는 기존 운영자 중 종주민을 우선하여 <u>선정하며, 미달시에는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u>	1. ----- ----- <u>선정한다.</u>

현행	개정안
<p>2. 선정기준은 상가주변, 재래시장 등 지역별,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단, 위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 구청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로 인정된 대상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또한 위 1호는 제8조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2. ----- ----- ----- . &lt;다서 삭제&gt;</p>
<p><b>제5조(재산조회)</b> 재산 소유액은 거리가게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합산한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응자금 및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으로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재산소유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b>제6조(거리가게 설치 및 금지구역 지정)</b> ①·② (생략) ③ (생략)</p> <p>1. 버스정류장 양끝 3m 이내 지점 2. 지하철 출구로부터 5m 이내 지점</p>	<p><b>제5조(거리가게 설치 및 금지구역 지정)</b></p> <p>①·② (현행 제6조제1항·제2항과 같음)</p> <p>③ (현행 제6조제3항과 같음)</p> <p>1. 버스, 택시 승강장 양끝 2m--- ----- 2.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출입구로부터 2.5m-----</p>

현행	개정안
<u>3. 횡단보도로부터 3m 이내 지점</u> <u>4. 지하도, 육교입구로부터 3m 이내 지점</u> <u>5. 6.7. (생략)</u>  <u>④ 교통안전 시거확보 구간, 민간의 영업에 크게 영향을 주는 구간, 민간·공공 주차장 출입구 양끝 3m 이내 지점 도로에는 거리가게를 설치할 수 없다.</u>	<u>3. ----- 2.5m -----</u> <u>4. 육교로부터 2.5m -----</u> <u>5. 6.7. (현행 제6조제3항제5호·제6호·제7호와 같음)</u> <u>④ ----- ----- ----- 2.5m ----- -----</u>
<u>제7조(거리가게의 판매품목 등) ① (생략)</u>	<u>제6조(거리가게의 판매품목 등) ① (현행 제7조제1항과 같음)</u>
<u>②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시에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단, 유사 품목은 제외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판매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u> <u>&lt;단서신설&gt;</u>	<u>② ----- ----- <u>있으며,</u> ----- ----- ----- . 단, <u>먹거리로의 변경은 불가하다.</u></u>
<u>제8조(점용허가 등) ① (생략)</u>	<u>제7조(점용허가 등) ① (현행 제8조제1항과 같음)</u>
<u>1. (생략)</u>  <u>2. 생계가 어려운 구민으로 실태조사 및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정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u>	<u>1. (현행 제8조제1항제1호와 같음)</u>  <u>2. ----- ----- ----- <u>대상자 선정</u> ----- ----- ----- <u>심의위위원회의 심의를 -----</u></u>

현행	개정안
<p>②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u>매년 재산 등 자격조건을</u> 심사하여 1년마다 기간을 연장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대상자가 거리가게의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u>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u>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u>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u> <u>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u>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u>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u>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 <u>매년 자격 조건</u>-----.</p> <p>③ ----- <u>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노점실명제 참여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서</u>-----.</p> <p>④ ----- <u>별지 제3호서식</u>-----.</p>
<u>제9조(점용허가 연장의 제한 등) (생략)</u>	<u>제8조(점용허가 연장의 제한 등) (현행 제9조와 같음)</u>
<p>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단, <u>제12조 제1항</u>에 따라 직계가족 중 1인이 전 운영자의 <u>잔여기간 내에서</u>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u>제10조</u>에 따른 동일한 위반행위로 허가기간 내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p>	<p>1. -----, <u>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u>-----.</p> <p>2. <u>제9조</u>-----.</p>

현행	개정안
<p>3.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가 허가기간 내 총 5회 이상이거나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p> <p><u>4.5. (생략)</u></p>	<p>3. 제9조----- ----- ----- ----- -----</p> <p><u>4.5. (현행 제9조제4호·제5호와 같음)</u></p>
<p><u>제10조(행위의 금지) ① (생략)</u></p> <p>1. (생략)</p> <p>2. 제7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p> <p><u>3.4.5.6.7.8. (생략)</u></p> <p><u>②·③ (생략)</u></p>	<p><u>제9조(행위의 금지) ① (현행 제10조제1항과 같음)</u></p> <p>1. (현행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음)</p> <p>2. 제6조----- -----</p> <p><u>3.4.5.6.7.8. (현행 제10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와 같음)</u></p> <p><u>②·③ (현행 제10조제2항·제3항과 같음)</u></p>
<p><u>제11조(점용허가 취소) (생략)</u></p> <p>1. (생략)</p> <p><u>&lt;신설&gt;</u></p>	<p><u>제10조(점용허가 취소) (현행 제11조와 같음)</u></p> <p>1. (현행 제11조제1호와 같음))</p> <p>2. 거리가깝게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단,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현행	개정안
<p>2.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단, 운영자가 사망하여 그 직계 가족 중 1인이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p> <p>-----</p> <p>--. &lt;단서삭제&gt;</p>
<p>3. (생략)</p>	<p>4. (현행 제11조제3호와 같음)</p>
<p>4.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u>연 3호</u>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p>	<p>5.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p> <p>-----<u>허가기간 내 3호</u>-----</p> <p>-----</p>
<p>5.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u>연2호</u>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1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로 한다.</p>	<p>6.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p> <p>-----<u>허가기간 내 2호</u>-----</p> <p>----- .---, <u>제6조제1항제1호</u>-----</p> <p>-----</p> <p>-.</p>
<p>6. 제12조제10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거부하는 경우</p>	<p>7. 제11조제10항-----</p> <p>----</p>
<p>7. 제18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p>	<p>8. 제17조제2항-----</p>
<p>8. 별표1에 따른 누적벌점이 <u>연 120점</u> 이상이 되는 경우</p>	<p>9. -----<u>허가기간 내 120점</u> 이상이 되는 경우</p>

현행	개정안
<p><u>제12조(거리가게의 관리) &lt;신설&gt;</u></p> <p>① 구청장은 운영자가 사망하는 등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계가족 중 1인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점용허가를 승계한자의 점용 허가기간은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② 구청장은 허가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계속 거리가게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거리가게 임시폐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후승인을 할 수 있다.</p>	<p><u>제11조(거리가게의 관리) ① 거리가게는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u>  <u>다만,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거리가게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리가게 운영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으나 직계 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단, 거리가게 운영을 승계 받은 자는 재승계할 수 없다.</p> <p>③----- ----- ----- 별지 제6호서식 ----- ----- ----- . -----, ----- ----- .</p>

현행	개정안
<p>③ 구청장은 운영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처리한다.</p>	<p>&lt;삭제&gt;</p>
<p>1.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p>	
<p>2. 주택임대차 계약서</p>	
<p>3. 사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공증 등)</p>	
<p>④ 구청장은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거리가게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구청에서 발급한 운영자 증명서를 일반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하며 운영자 증명서에는 운영자 및 보조자(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인)의 사진을 첨부한다.</p>	<p>④ ----- -----별지 제7호서식----- ----- .----- -----도로점용허가증을 일반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한다.</p>
<p>⑤·⑥·⑦ (생략)</p>	
<p>⑧ 운영자는 거리가게에 부과되는 각종 도로점용료, 대부료, 전기료 등 각종 부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p>	<p>⑤·⑥·⑦ (현행 제12조제5항·제6항·제7항과 같음)  ⑧ ----- 도로점용료,- -----,------ ----- -----.</p>

현행	개정안
<u>⑨·⑩·⑪</u> (생략)  <u>&lt;신설&gt;</u>	<u>⑨·⑩·⑪</u> (현행 제12조제9항·제10항·제11항과 같음)  <u>⑫</u> 구청장은 감염병 등 국가 및 지역사회의 재난·재해 시 거리가게 임시폐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u>제13조(위생 청결유지 등)</u> (생략)  <u>1.·2.·3.·4.·5.·6.</u> (생략)  <u>&lt;신설&gt;</u>	<u>제12조(위생 청결유지 등)</u> (현행 제13조와 같음)  <u>1.·2.·3.·4.·5.·6.</u> (현행 제13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와 같음)  <u>7. 오폐수는 배수시설이 있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것.</u>
<u>제14조(안전관리 의무) ①·②</u> (생략)  <u>&lt;신설&gt;</u>	<u>제13조(안전관리 의무) ①·②</u> (현행 제14조제1항·제2항과 같음)  <u>③</u>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u>제15조(시설물 철거 등) ①</u> 운영자는 점용허가 기한이 경과된 경우나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u>제14조(시설물 철거 등) ①</u> ----- ----- ----- ----- <u>제10조</u> ----- ----- ----- -----

현행	개정안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 내에 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로법」제7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p>	<p>② ----- ----- ----- 「<u>도로법</u>」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른 ----- -----.</p>
<p><u>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u>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11조에 따른 허가취소, 제15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p>	<p><u>제15조(처분의 사전통지)</u> ----- 제9조----- -----, 제10조 -----, 제14조----- ----- 「<u>행정절차법</u>」에서 정하는 사전통지 등의 절차----- -----.</p>
<p><u>제17조(상생자율협의체 구성 등)</u> (생략)</p>	<p><u>제16조(상생자율협의체 구성 등)</u> (현행 제17조와 같음)</p>
<p><u>제18조(실태조사)</u> (생략)</p>	<p><u>제17조(실태조사)</u> (현행 제18조와 같음)</p>
<p><u>제19조(운영자 교육)</u> 구청장은 거리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거리가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u>제18조(운영자 교육)</u> &lt;삭제&gt;  <u>①</u> 구청장은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거리가게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u>&lt;신설&gt;</u></p>	

현행	개정안
<신설>	<p>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위탁교육, 집 학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신설>	<p>③ 제2항과 관련한 위탁교육시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제20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생략)	<p>제19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현행 제20조와 같음)</p>
<p>1. 점용료 : 「서울특별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p> <p>2. (생략)</p>	<p>1. -----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p> <p>2. (현행 제20조제2호와 같음)</p>
<신설>	<p>제20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 [별표 1]

## 거리가게 위반행위 조치기준

현행				개정안						
위반행위	관련 규정	위반횟수			위반행위	관련 규정	위반횟수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1.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10조 제13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1.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9조 제12조	사정 명령 또는 과태료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2. 판매대 외 제3조2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2. 판매대 외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3. 임의로 판매대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3. 임의로 판매대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사람 외에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5일	허가 취소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사람 외에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5일	허가 취소	
5. 제7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5일	허가 취소	5. 제6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5일	허가 취소	
6. 판매대 종류에 반하는 물품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먹거리류, 잡화류(공산 품류), 취급 품목 미준수)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6. 허가된 품목에 반하는 물품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7.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판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7.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판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8.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8.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9.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9.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1.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대 내에 운영자 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13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1.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대 내에 도로점용허가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12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2. 위생청결 유지 등 위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2. 위생청결 유지 등 위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3. 판매대 벽면 등 외부에 승인받지 아니한 포스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첨하는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3. 판매대 벽면 등 외부에 승인받지 아니한 포스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첨하는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4. 판매대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4. 판매대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5. 기타 「판매대 관리 등 운영자의 의무」 미준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5. 기타 「판매대 관리 등 운영자의 의무」 미준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1.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7항에 따른 구청족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4.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 5. 누적벌점이 연120점 이상인 경우 6. 판매대를 대부목적 및 점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8.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된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11조				1.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조제7항에 따른 구청족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삭제> 4. 누적벌점이 허가기간 내 120점 이상인 경우 5. 판매대를 대부목적 및 점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7.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된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10조				